

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673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대리인 장주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변 론 종 결 2023. 2. 10.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해 2018. 4.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7. 20.경 C에게 2천만 원을 이율 연 27.9%로 정해 대여해주었다(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2020. 5. 13.경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22. 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C을 상대로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2. 6. 23. “C은 원고에게 34,073,961원 및 그 중 19,340,3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차전14982)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이 2018. 1. 25. 사망(이하 편의상 ‘망인’이라 한다)하자 상속인들은 2018. 4. 9.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해 2018. 4.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피고의 자녀이고, F의 사망에 따른 C의 상속지분은 2/9이며, 이 사건 협의 무렵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협의 이전에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전부 피고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으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작성된 점, 일단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후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다른 점, 상속의 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C이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 수리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가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혼인하여 출가한 C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평소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자주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이자 배려의 의무로 상속인들이 일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을 통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며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와 C은 모녀관계에 있고 피고와 C이 모두 청주시에서 거주하여 온 점, C은 2017년경부터 여러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1)에 관하여 2018.

4. 9.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하고 있다.